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의약품 처방과 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

김지운 선임연구원 · 오기환 센터장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미국 연방대법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
-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에서는 임신중절(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영향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임신중절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의 사용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계획 중이며, FDA가 허가한 약물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금지할 수 있나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허용하는 주간에도 임신중절약 접근과 이동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에 임신중절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허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 낙태의 42%가 약물 낙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약물 낙태(medication abortion)에 사용되는 약은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말함.
- FDA는 임신중절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하였고, 2021년 12월에 이러한 규정을 영구적으로 제외하였음.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환자가 받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임.
- FDA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리스톤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 Act)에 적용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힘.
-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절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개인들이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 사용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FDA의 권한에 대한 도전도 있을 수 있음. 즉, 이러한 주에서는 직접 임신중절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처방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산전 유전자 검사(Prenatal Genetic Tests)에 대한 영향

-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에서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전 유전자 검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모가 유전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음.
-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또는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유전적 기형(genetic anomalies)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체외 시술을 받을 수 있음.
- 산전 유전자 검사는 특히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기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킴. 한 연구에 따르면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임신부의 67%가 낙태를 결정함.

◇ 한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상황

- 국내 식약처가 허가한 임신중절약은 없음. 약물을 통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없음.
- 우리나라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 이 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라 국내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음.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참고자료〉

1. Supreme Court's Roe Ruling Tees Up Fight Over Abortion Pills, Bloomberg Law, 2022.6.27.
2. Abortion Pill Access Will Remain Post-Roe: FDA Rules Explained, Bloomberg Law, 2022.6.25
3. In flurry of court activity, rulings on abortion bans mixed, AP News, 2022.6.29.
4. Laabs, Carolyn A. "Prenatal Genetic Screening and Potential Complicity in Abortion: Considerations for Catholic Health Care." *The Linacre Quarterly* 87.2 (2020): 206–217.
5. Genetic screening results just got harder to handle under new abortion rules, Fierce Biotech, 2022.6.27.
6.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6.30. 접근